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☐ 재안이유

- 충북과학대학 운영 및 학사관리 업무 등의 심의기구인 대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선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대학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조정
-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경제적,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·위촉하는 자로 하던 것을 ⇒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의회교육사회위원장·기획관리실장·옥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.

☐ 의안전문 : 따로 붙임☐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☐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③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의회교육사회위원장·기획관리실장·육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<u>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경제적,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·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u>	제4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당연적위원은 충청북도의회교육사회위원장·기획관리실장·육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이 되고, 위촉적위원은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·교육훈련기관·보건진료기관·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2조(자문기관의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